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평가 매뉴얼

2018.

산안법 제31조의2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평가지표

분야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합 계		1,000
A 운영 체계	소 계		400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 체계	1.1 운영방침 및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40
		1.2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3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인적기준)	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및 정규직 채용 노력도	70(+40)
		2.2 직원 교육·훈련의 적정성	100
		2.3 교육장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시 대처 방법의 적정성	5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3.1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80
		3.2 휴게공간 등 교육생 편의시설의 적정성	30(+5)
	가 감 점 항 목	4.1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	+10
		4.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5~-80
		4.3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20
B 업무 성과	소 계		600
	B.1 교육관리	1.1 교육실시 활성화의 적정성	40
		1.2 교육생 체험교육 실시 및 우수사례 선정	(+100)
		1.3 교육계획(일정)의 전산입력의 적정성	50
		1.4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성	30(-10)
		1.5 교재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	110(+20)
		1.6 교육생 실습교육의 적정성	40
	B.2 교육생 관리	2.1 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	80
	B.3 고객 만족도	3.1 교육이수자 만족도	100
	B.4 교육 후 평가 및 개선 노력	4.1 교육프로그램 자체평가 및 개선의 적정성	70
	B.5 수시점검 결과	5.1 수시점검 평가 결과	80

A 운영체제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세부평가 A.1.1	운영방침 및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배점:4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운영방침 및 연간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연간 교육계획 수립시 아래 <표1> 필수 반영 사항 ①~⑤를 모두 반영한 경우	☐ 40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아래 <표1> 필수 반영 사항 ①~⑤ 중 1건을 미반영한 경우	☐ 30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아래 <표1> 필수 반영 사항 ①~⑤ 중 2건 이상 미반영한 경우	☐ 10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0
평가취지		
○ 합리적인 교육 수요 예측을 통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내용의 충실도 및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운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운영방침 및 교육계획의 수립여부는 연간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문서화*된 서류(이하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 * 매년 2월 이내 수립한 교육계획에 한함 (연중 신규 등록기관: 등록 후 1개월 이내) ※ '18년도는 평가 설명회 이후 1개월 이내 수립한 교육계획도 인정 ** 내부결재를 득하여 일련번호(등록번호)와 등록일자를 부여한 문서만 인정(이하 "문서"란 동일한 의미로 사용)		
<표1> 필수 반영 사항 ① 교육과정명, 교육 대상(과정별 인원 포함) 및 목적 ② 연간 교육일정 : 월별 일정, 강사, 장소 및 시간 등 ③ 교육생 확보 방안(교육과정 홍보 방안 포함) ④ 교육내용 : 교육과정별 커리큘럼 및 교육 방법(강의식, 실습식 등) ⑤ 교육생 만족도 향상 방안		
현장확인사항		
○ 연간교육계획서, 업무매뉴얼 등		

세부평가 A.1.2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배점:3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교육사업 업무관리체계에 따라 교육 기관 운영 시 아래 <표> 미흡사항 ①~②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을 경우	☐ 30
	교육사업 업무관리체계에 따른 교육 기관 운영 시 아래 <표> 미흡사항 ①~②에 해당하는 항목이 1건 있을 경우	☐ 20
	교육사업 업무관리체계에 따른 교육 기관 운영 시 아래 <표> 미흡사항 ①~②에 해당하는 항목이 2건 있을 경우	☐ 0
평가취지		
○ 교육기관의 업무관리체계 따른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을 문서화하여 시행함으로써 교육기관 운영의 시스템화를 유도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교육기관의 업무관리 체계는 교육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와 현장 확인을 통해 평가 ※ 등록 기준상의 자격기준에 맞는 인력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하고 고용노동부에 행정조치 의뢰		
<표2> 미흡사항 ① 조직도 및 업무분장 사항을 문서화 하지 않은 경우 ② 조직도상 인력이 실제 업무 분장 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현장확인사항		
○ 조직도, 업무분장, 고용계약서 등		

A.2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인적기준)

세부평가 A.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및 정규직 채용 노력도(배점:70점, 가점:4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 점		
전문인력 확보 및 정규직 채용 노력도	■ 전문인력 추가 확보 및 정규직 채용 여부(배점:30점, 가점:40점)	
	간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등록에 필요한 최소 정규직 인력3명 : '가호 강사 1명, '나호 강사 2명만을 확보한 경우	☐ 30
	간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등록에 필요한 최소 정규직 인력3명 : '가호 강사 1명, '나호 강사 2명) 외에 강사 기준에 적합한 정규직 인력 2명 이상 추가로 확보(등록)한 경우	가점 : 40점
전문인력 확보 노력도	간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등록에 필요한 최소 정규직 인력3명 : '가호 강사 1명, '나호 강사 2명) 외에 강사 기준에 적합한 정규직 인력 1명을 추가로 확보(등록)한 경우	가점 : 20점
	■ 전문인력 확보 여부(배점:40점)	
	기술사, 지도사 자격'을 가진 교육강사가 전체 교육강사의 60% 이상인 경우	☐ 40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이 되는 교육강사가 전체 교육강사의 60% 이상인 경우	☐ 20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이 되는 교육강사가 전체 교육강사의 60% 이상인 경우	☐ 10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이 되는 교육강사가 전체 교육강사의 60% 미만인 경우	☐ 0	
평가취지		
○ 우수 교육강사 확보를 통해 교육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전문인력 확보 노력		
- 전문인력 자격 적용 : 교육강사 1인이 자격 및 학위 등 중복해당시 한가지만 선택 제시 * 기술사, 지도사 자격 : 산안법 시행령 별표6의4 2호의 가목 1의 인력기준에서 요구하는 자격 - 기술자 등급구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특급기술자	1)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5) 부속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전문인력 추가확보 및 정규직 채용노력은 가점(40점 or 20점) 중 높은 점수 적용		
현장확인사항		
○ 고용계약서, 자격증, 학위 취득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세부평가 A.2.2		직원 교육훈련의 적정성(배점:10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 점			
직원 교육·훈련의 적정성	■ 교육기관 직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배점:50점)		
	직원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시간) 0.5 이상 ~ 0.5 미만		☐ 50
	직원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시간) 0.4 이상 ~ 0.3 미만		☐ 40
	직원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시간) 0.3 이상 ~ 0.2 미만		☐ 30
	직원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시간) 0.2 이상 ~ 0.1 미만		☐ 20
	직원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시간) 0.1 미만		☐ 0
	■ 내부강사의 강의능력 향상 노력 여부 (배점:50점)		
	강사 강의능력 향상 활동 참여 비율(횟수)이 0.5 이상인 경우		☐ 50
	강사 강의능력 향상 활동 참여 비율(횟수)이 0.3 이상 ~ 0.5 미만인 경우		☐ 30
강사 강의능력 향상 활동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		☐ 0	
평가취지			
○ 교육기관의 직원(내부강사 및 과정운영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이행 유도를 통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교육기관 직원(내부 강사 및 과정운영 담당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			
- (직원역량강화활동) : 문서화된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행한 안전보건관련 교육 활동			
참여비율(시간) : $\frac{\text{평가대상기간내 직원별 역량강화활동총시간}}{\text{직원수} \times 16\text{시간}}$			
* 직원수 : 내부강사 및 과정운영담당자			
○ 내부강사에 대한 강의능력 향상 노력 여부			
- (강사강의능력향상활동) : 문서화된 연간 교육·훈련계획 이외에 추가로 강의능력향상을 위해 관련분야 세미나, 학회 참석 등의 활동(내부강사)			
참여비율(횟수) : $\frac{\text{평가대상기간내 강사별 강의능력향상활동총횟수}}{\text{내부강사} \times \text{연인원}}$			
* (내부강사) : 해당 교육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로 산안법 시행령 별표6의4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			
현장확인사항			
○ 교육·훈련 계획 문서, 강사 및 과정운영 담당자의 외부교육 이수증 등			

세부평가 A.2.3	교육장 안전관리 계획 및 비상시 대처방법의 적정성(배점5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 점		
교육장 안전관리 계획 및 비상시 대처방법의 적정성	■ 교육생 안전관리계획 시행 여부(배점:20점)	
	교육장 안전관리계획이 문서화되어 있고 적절한 경우	☐ 20
	교육장 안전관리계획이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	☐ 0
	■ 교육장 안전시설 구비 여부(배점:30점)	
	비상 대피경로 교육장내 게시 및 교육생 대상 안내 여부(배점:10점)	
	교육장 내 소방설비 및 장비(소화기 등)가 갖추어져 있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경우(배점:10점)	
	전용구급함(응급조치 물품)이 구비되어 있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경우(배점:10점)	
평가취지		
○ 교육장 안전관리 계획 및 비상시 대처 방법의 적정성을 통해 화재 발생 등 비상사태 시 교육생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교육장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여부 : 안전시설 관리 및 유지계획, 비상 연락망 구축, 비상 대피경로게시, 비상시 대처방안 게시 및 안내, 응급 조치물품 구비 및 관리방안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		
○ 교육장 안전시설 구비 여부는 세부평가기준 점수(세부 평가기준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 아닐 경우 0점)를 합산하여 산정		
현장확인사항		
○ 전용구급함, 응급조치 물품구비 확인, 교육장 안전점검일지 등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관리)

세부평가 A.3.1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배점:8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 점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 교육기관 등록기준 이상의 장비 보유 여부(배점:70점)	
	법적기준의 필수시설 및 장비 외에 강의실 면적이 법정 기준보다 20㎡이상 초과 보유하고 교육장비가 법정 기준보다 3종 이상 초과 보유	☐ 70
	법적 기준 필수시설 및 장비 외에 강의실의 면적이 법정 기준보다 20㎡이상 초과 보유한 경우 또는 교육장비가 법정 기준보다 3종 이상 초과 보유	☐ 50
	법적기준의 필수 시설 및 장비를 보유	☐ 10
	법적기준의 필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	☐ 0
	■ 보유장비 유지·관리상태의 적정성(배점:10점)	
	보유 장비가 모두 정상작동 되는 경우	☐ 10
	보유 장비 중 정상작동 되는 비율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경우	☐ 5
	보유 장비 중 정상작동 되는 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 0
평가취지		
○ 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실적 확인을 통해 실습 및 체험식 교육을 확대 및 유도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교육기관 장비 보유 여부는 산업법 시행령 별표6의4 제3호 시설 및 장비기준 - (법적기준 필수 시설 및 설비) : 사무실(30㎡), 강의실 연면적(120㎡), 방음, 채광, 환기, 냉난방 시설 - (법적기준 필수장비) : 빔프로젝트, 음향 등의 비품과 교육용 컴퓨터, 카드발급기		
현장확인사항		
○ 실제 장비, 장비이력 관리대장, 장비사용대장, 교육결과보고서 등		

세부평가 A.3.2 휴게공간 등 교육생 편의시설의 적정성(배점 30점, 가점:5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 점		
휴게공간 등 교육생 편의시설 보유 여부	■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배점:20점)	
	휴게공간은 사무실 및 강의실과 별도 공간에 해당 교육기관 전용으로 확보 되어야하고, 냉·난방 시설, 소파(의자), 탁자 및 냉온정수기가 있는 등 위의 모든 기준을 만족할 경우	☐ 20
	휴게공간은 사무실 및 강의실과 별도 공간에 해당 교육기관 전용으로 확보 되어있지 않거나 냉·난방 시설, 소파(의자), 탁자 및 냉온정수기가 없는 경우	☐ 0
	■ 기본적인 편의시설 외 추가 편의시설을 보유(배점:10점)	
	휴게공간 내에 추가 편의시설* 항목 중 4가지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 10
	휴게공간 내에 추가 편의시설 항목 중 4가지 미만일 경우	☐ 0
교육생 주차지원 가능여부	■ 교육생 주차지원 여부(가점 5점)	
	해당 교육장 반경 100m 이내에 10인 이상 무료 주차가 가능한 주차 시설을 보유한(해당시설과 사용계약이 된 경우) 경우	☐ 5
	해당 교육장 반경 100m 이내에 10인 이상 무료 주차가 가능한 주차 시설을 보유(해당시설과 사용계약이 된 경우)하지 못한 경우	☐ 0
평가취지		
○ 교육생 편의시설 확보를 유도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기본적인 편의시설 외에 추가적인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평가 - (추가 편의시설 항목) : ① 고정식 휴대전화 충전기(2개 이상 인정), ② 커피 또는 음료자판기 (무료제공 다과 인정), ③ 무료 무선인터넷, ④ 인터넷PC, ⑤ TV, ⑥ 상시비치 안전보건 관련 자료(책자, 월간지 등)		
현장확인사항		
○ 시설물 사용 계약서, 현장확인 등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가감점 항목)

세부평가 A.4.1		포상실적(가점:1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포상실적		평가대상기간내 기관 및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가점:10점)	
평가취지		○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평가를 통해 교육품질향상에 동기부여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평가대상기간내 기관 및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은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분야로 아래의 포상 훈격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 (최대 10점) - 대통령 포상 : 5점 × 포상수 - 국무총리 포상 : 4점 × 포상수 - 고용노동부장관 포상 : 3점 × 포상수 - 공단 이사장 포상 : 2점 × 포상수 ※ (예시) 교육기관이 대통령 포상을 받았고, 장관포상을 받은 직원 1명, 공단 이사장 포상을 받은 직원이 2명 있을 경우 : 총 12점(5점+3점+2점+2점) 이나 상한 10점 부여			
현장확인사항		○ 표창장 실물, 포상 일련번호 등	

세부평가 A.4.2 업무정지 처분(감점: -80점 ~ -15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업무정지 처분	평가대상기간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감점: -80점 ~ -15점)
평가취지	
○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평가를 통해 교육품질향상에 동기부여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평가 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실적을 받아서 평가 - 처분확정일을 기준으로 최종 처분기간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평가 -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최초 업무정지 예정 기간으로 평가 ○ 평가대상기간내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감점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 -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점수 : -15점 × 처분 개월수(최대 감점 -80점) ※ (예시) 교육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6개월을 받은 경우 실제 감점은 -90점(-15점×6개월)이나 최대 감점 점수를 적용하여 -80점 부여	
현장확인사항	
○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 관련 실적 및 현장 평가 시 확인 등	

세부평가 A.4.3		시정조치 경고처분(감점: -2점 ~ -2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시정조치·경고처분		평가대상기간내 시정조치·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2점 ~ -20점)	
평가취지			
○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평가를 통해 교육품질향상에 동기부여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평가 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조치·경고처분 등의 행정처분 실적을 받아서 평가 - 처분확정일을 기준으로 시정조치·경고 처분 건수 평가 ○ 평가대상기간내 시정조치·경고처분에 따른 감점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 - 시정조치·경고처분에 따른 점수 : -2점 × 처분 건수(최대 감점 -20점) ※ (예시) 교육기관이 시정조치 6건, 경고처분 5건을 받았을 경우 실제 감점은 -22점 (-2점×11건)이나 최대 감점 점수를 적용하여 -20점 부여			
현장확인사항			
○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 관련 실적 및 현장 평가 시 확인 등			



B 업무성과

B.1 교육관리

세부평가 B.1.1	교육실시 활성화의 적정성(배점4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 점		
교육실시 활성화의 적정성	■ 교육 실시 횟수 노력도(배점:30점)	
	평가대상기간 교육 실시횟수가 360회 이상	☐ 30
	평가대상기간 교육 실시횟수가 300회 이상 360 미만	☐ 25
	평가대상기간 교육 실시횟수가 250회 이상 300회 미만	☐ 20
	평가대상기간 교육 실시횟수가 100회 이상 250회 미만	☐ 10
	평가대상기간 교육 실시횟수가 100회 미만	☐ 0
	■ 교육실시 안내를 위한 홍보 노력도(배점:10점)	
	교육실시 안내를 위한 홍보 방법이 10건 이상인 경우	☐ 10
	교육실시 안내를 위한 홍보 방법이 5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 7
	교육실시 안내를 위한 홍보 방법이 5건 미만인 경우	☐ 3
	교육실시 안내 사례가 별도로 없는 경우	☐ 0
평가취지		
○ 교육기관의 교육실시 활성화 노력 평가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운영을 유도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일반교육 실시 횟수의 적정성에서 무료교육 횟수 제외함 ○ 홍보물 제작 배포는 건설현장 또는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배포물, 광고지, 현수막, 교육안내 내용이 삽입된 노트·부채 등 기타 홍보물		
현장확인사항		
○ 출석부와 이수증 (재)발급대장 확인, 전산등록 오류는 K2B 수정 요청 접수문서 및 Q&A 기준 등 (K2B 입력자료 확인)		

세부평가 B.1.2	교육생 체험교육 적정성 및 우수사례 선정 여부(가점:10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 점		
교육생 체험교육 적정성 및 우수사례 선정 여부	■ 체험교육계획 수립 여부(가점:10점)	
	VR콘텐츠 및 장비를 활용한 체험교육계획이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가점:10점)	
	■ 체험교육 장비 보유 여부(가점:10점)	
	체험교육에 필요한 VR장비를 (최소40개) 보유한 경우 (가점:10점)	
	■ 체험교육 실시 여부(가점:30점)	
	VR콘텐츠 및 장비를 활용한 체험교육계획에 따라 체험교육이 모두 실행된 경우(가점:30점)	
	■ 체험·참여형 교육 우수사례 선정(가점:50점)	
	체험·참여형 교육 우수사례에 선정된 교육기관(가점:50점)	
평가취지		
○ 교육생 체험교육 실시 및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체험교육을 확대 유도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체험교육계획 수립 여부 - 체험교육계획서 : VR콘텐츠 및 장비를 활용한 체험교육계획이 적정하게 문서화 되어 있는 경우 ○ 체험교육 장비 보유 여부 - HMD(Head mounted Display) 장비를 보유할 경우 인정 ※ HMD 장비 : 종이재질의 일회성 장비가 아닌 것 (예:카드보드) ○ VR 콘텐츠 활용 여부 - 체험교육 실행 여부 : 체험교육계획에 따라 자체 제작 또는 공단에서 보급한 VR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기관별 평가일일 이전까지 실시한 실적에 대해 평가 ※ ‘18년 상반기 공단에서 안전보건관련 VR컨텐츠(정보전달형) 약 20종을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임 ※ 교육결과보고서에 체험교육 사진 첨부 ○ 체험·참여형 교육 우수사례 - 상반기 공단 지역본부별 간담회시 체험·참여형 교육 우수사례에 선정된 교육기관에 대해 가점 부여		
현장확인사항		
○ 실제 장비, 장비이력 관리대장, 장비사용대장, 교육결과보고서 등		

세부평가 B.1.3		교육계획(일정)의 전산입력의 적정성(배점 5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교육계획(일정)의 전산입력의 적정성		교육계획 등록 지연점수의 합이 0인 경우				☐ 50	
		교육계획 등록 지연점수의 합이 1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40	
		교육계획 등록 지연점수의 합이 10점 이상 25점 미만인 경우				☐ 30	
		교육계획 등록 지연점수의 합이 25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				☐ 20	
		교육계획 등록 지연점수의 합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 10	
		교육계획 등록 지연점수의 합이 75점 이상인 경우				☐ 0	
평가취지							
○ 교육계획(일정) 등록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교육계획 등록 지연점수 판정 :							
교육실시일	당일	1일전	2일전	3일전	4일전	5일전	
지연점수	5	4	3	2	1	0	
- 교육계획의 전산입력 지연점수 평가결과는 지연점수의 합에 의해 평가							
현장확인사항							
○ K2B 입력자료 확인							

세부평가 B.1.4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성(배점:30점, 감점:-1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총 점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성	☒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배점:10점)		
	최근 6개월 이내 매 2개월마다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카페, 블로그 등 교육기관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채널(이하 온라인 채널)이 있는 경우(모두 해당할 경우))	☐ 10	
	최근 6개월 이내 매 2개월마다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거나, (홈페이지 또는 카페, 블로그 등 교육기관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채널(이하 온라인 채널)이 없는 경우)	☐ 0	
	☒ 안전보건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배점:10점)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안전보건관련 자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등록된 자료가 있는 경우(모두 해당할 경우)	☐ 10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안전보건관련 자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	☐ 0	
	☒ 온라인상에서 질의·응답이 가능한 경우(배점:10점)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교육생의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기간 중 교육생 질의에 대해 90%이상 답변을 하고 있는 경우(모두 해당할 경우)	☐ 10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교육생의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기간 중 교육생 질의에 대해 90%이상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 0	
	☒ 커뮤니티·홈페이지 운영의 부적정(감점:-10점)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내용 확인시 부적정 내용이 있는 경우			-10
평가취지			
○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교육기관과 교육생간 환류(Feed Back)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안전보건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과 링크를 제공할 경우 10점 인정			
현장확인사항			
○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			

세부평가 B.1.5		교재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배점 110점 / 가점 2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 점			
교재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	■ 교육 목표에 적합한 주교재 사용여부(배점:20점)		
	지체적으로 제정한 필수 교육교재(제본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		☐ 20
	공단 발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10
	별도의 교재가 없을 경우(단순 출력물을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		☐ 0
	■ 교육내용의 적정성(배점:80점)		
	건설업 필수 교육교재(7개)*를 모두 보유하고, 교재 (안전보건일반 제외) 내용 중 <표3>의 필수교육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경우		☐ 80
	건설업 필수 교육교재(6개~5개)*를 보유하고, 교재 (안전보건일반 제외) 내용 중 <표3>의 필수교육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경우		☐ 60
	건설업 필수 교육교재(4개~3개)*를 보유하고, 교재 (안전보건일반 제외) 내용 중 <표3>의 필수교육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경우		☐ 40
	건설업 필수 교육교재(2개미만)*를 보유한 경우		☐ 0
	■ 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교재사용여부(배점:10점)		
주교재 내용이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을 경우		☐ 10	
주교재 내용이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 0	
외국인 근로자용 교재 비치여부	■ 외국인 근로자용 교육자료 비치여부(가점:20점)		
	외국인 근로자용 5개 외국어 교육자료를 모두 비치한 경우		+ 20
평가취지			
○ 교육목적에 적합한 교육 실시를 유도하여 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세부평가 B.1.5		교재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배점 110점 / 가점 2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주요평가내용																	
○ 교육내용 적정성 * 건설업 필수교재(7개) <table><tr><th>업종</th><th>교육과정</th></tr><tr><td>공통</td><td>1. 안전보건일반 (안전보건개론,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보건표지, 응급조치요령)</td></tr><tr><td>건설업</td><td>1. 건설기계일반 2. 전기안전 3.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관리 4. 질식재해예방 5. 근골격계질환 예방 6.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td></tr></table> <표3> 필수 반영 사항 <table><tr><th>필수교육내용</th><th>세부내용</th></tr><tr><td>① 유해·위험요인</td><td>작업별 작업자에게 사고·상해 및 질병을 일으킬 요인</td></tr><tr><td>② 사고사례</td><td>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사례(직업병포함)</td></tr><tr><td>③ 보호구 착용방법</td><td>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방법</td></tr></table> ○ 외국인 근로자용 교재 5개 외국어 - 중국,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 전년도 외국인 교육이수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5개국 선정				업종	교육과정	공통	1. 안전보건일반 (안전보건개론,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보건표지, 응급조치요령)	건설업	1. 건설기계일반 2. 전기안전 3.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관리 4. 질식재해예방 5. 근골격계질환 예방 6.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필수교육내용	세부내용	① 유해·위험요인	작업별 작업자에게 사고·상해 및 질병을 일으킬 요인	② 사고사례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사례(직업병포함)	③ 보호구 착용방법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업종	교육과정																
공통	1. 안전보건일반 (안전보건개론,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보건표지, 응급조치요령)																
건설업	1. 건설기계일반 2. 전기안전 3.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관리 4. 질식재해예방 5. 근골격계질환 예방 6.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필수교육내용	세부내용																
① 유해·위험요인	작업별 작업자에게 사고·상해 및 질병을 일으킬 요인																
② 사고사례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사례(직업병포함)																
③ 보호구 착용방법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현장확인사항																	
○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주교재 및 부교재 등 실물 책자, 교육과정 동영상(콘텐츠) 등																	

세부평가 B.1.6		교육생 실습교육의 적정성(배점:4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 점			
교육생 실습교육의 적정성	■ 실습교육계획 수립 여부(배점:10점)		
	실습교육 장비를 활용한 실습교육계획이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		□ 10
	실습교육 장비를 활용한 실습교육계획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 0
	■ 실습교육 장비 보유 여부(배점:10점)		
	실습교육에 필요한 장비를(10종) 모두 보유한 경우		□ 10
	실습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미보유한 경우		□ 0
	■ 실습교육 실시 여부(배점:20점)		
	실습교육계획에 따라 실습교안을 활용하여 실습교육을 모두 실시한 경우		□ 20
	실습교육계획에 따라 실습교안을 활용하여 실습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0
평가취지			
○ 교육생 보유장비 실습교육 실시를 통해 실습교육을 확대 유도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실습교육			
- 실습교육 : 집체교육시 실습교안 및 실습교육장비를 활용한 교육			
※ 실습교안 : '18년 상반기 실습교안 10종에 대해 공단에서 무상 보급예정			
○ 실습교육 장비 보유 여부			
- 실습교육장비 10종 : 개인보호구, A형사다리, 벨트슬링, 작업릴선 및 전선, 심폐소생술, 고속절단기, 임시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접지, 밀폐공간장비(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산소/LPG, 작업조명등			
○ 실습교육 실시 여부			
- 교육기관별 평가실시일 이전까지 실적에 대해 평가			
※ 교육결과보고서에 실습교육 사진 첨부			
현장확인사항			
○ 실제 장비, 장비이력 관리대장, 장비사용대장, 교육결과보고서 등			

B.2 교육생 관리

세부평가 B.2.1		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배점 8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 점			
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	■ 교육생의 출결관리 방법 지정 여부(배점:20점)		
	과정별로 출결관리 방법이 지정되어 있고 문서화된 경우(배점:10점)		
	본인 확인 절차가 지정되어 있고 문서화된 경우(배점:10점)		
	■ 출석부·이수증 관리대장·(재)발급대장 관리상태 여부(배 점:30점)		
	출석부 및 이수증 관리대장 및 (재)발급대장 작성 누락·분실 및 전산등록 오류가 없는 경우		☐ 30
	출석부 및 이수증 관리대장 및 (재)발급대장 작성 누락·분실 및 전산등록 오류가 1~2건 인 경우		☐ 25
	출석부 및 이수증 관리대장 및 (재)발급대장 작성 누락·분실 및 전산등록 오류가 3건 인 경우		☐ 20
	출석부 및 이수증 관리대장 및 (재)발급대장 작성 누락·분실 및 전산등록 오류가 4건 인 경우		☐ 15
	출석부 및 이수증 관리대장 및 (재)발급대장 작성 누락·분실 및 전산등록 오류가 5건 인 경우		☐ 10
	출석부 및 이수증 관리대장 및 (재)발급대장 작성 누락·분실 및 전산등록 오류가 5건 초과인 경우		☐ 0
	■ 교육 이수자 등록 지연 여부(배점:30점)		
	교육이수자 등록 지연일수 합이 0일인 경우		☐ 30
	교육이수자 등록 지연일수 합이 1일 이상 5일 미만		☐ 20
	교육이수자 등록 지연일수 합이 5일 이상 10일 미만		☐ 15
	교육이수자 등록 지연일수 합이 10일 이상 50일 미만		☐ 10
교육이수자 등록 지연일수 합이 50일 이상 100일 미만		☐ 5	
교육이수자 등록 지연일수 합이 100일 이상		☐ 0	
평가취지			
○ 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교육생 출결관리 방법의 적정성은 세부평가기준 점수(세부 평가기준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 아닐 경우 0점)를 합산하여 산정			
○ 교육이수자 등록은 교육 실시일 이후 최대 5일까지 등록가능 - 3일이후 입력부터 등록 지연 적용(2일이내 입력시 등록 지연 미적용)			
현장확인사항			
○ 출석부와 이수증은 (재)발급대장 확인하고 전산등록 오류는 K2B 수정 요청 접수문서 및 Q&A 기준 확인(K2B 입력자료 확인)			

B.3 고객 만족도

세부평가 B.3.1		교육이수자 만족도(배점: 10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교육이수자 만족도	교육이수자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가 98점 이상인 경우		☐ 100
	교육이수자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가 95점 이상 98점 미만인 경우		☐ 90
	교육이수자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 70
	교육이수자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 50
	교육이수자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 10
	교육이수자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 0
평가취지			
○ 교육이수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향후 교육기관 운영에 반영토록 유도하여 교육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평가대상기간내 K2B 근로자만족도 평가점수 조회 ○ 교육만족도 평균 점수 = $\frac{\text{교육만족도조사 총점}}{\text{만족도조사횟수}}$			
현장확인사항			
○ K2B 근로자만족도 평가점수 조회(K2B 입력자료 확인)			

B.4 교육 후 평가 및 개선노력

세부평가 B.4.1		교육프로그램 자체평가 및 개선의 적정성(배점: 7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 점			
교육프로그램 자체평가 및 개선의 적정성	■ 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 등 자체평가 실시율(배점: 50점)		
	교육생에 대한 설문 조사 등 자체평가 실시율이 90% 이상인 경우		☐ 50
	교육생에 대한 설문 조사 등 자체평가 실시율이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 40
	교육생에 대한 설문 조사 등 자체평가 실시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30
	교육생에 대한 설문 조사 등 자체평가 실시율이 70% 미만인 경우		☐ 0
	■ 공단이 주체하는 간담회 참석 실적(배점: 20점)		
	공단이 주체하는 간담회 참석 실적 100%		☐ 20
	공단이 주체하는 간담회 참석 실적 50% 이상 100% 미만		☐ 10
	공단이 주체하는 간담회 참석 실적 50% 미만		☐ 5
	공단이 주체하는 간담회 참석 실적이 없는 경우		☐ 0
평가취지			
○ 교육이수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 유도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교육생에 대한 설문 조사 등 자체평가 실시율 : (자체 평가 실시 횟수) / (일반교육 실시 횟수) × 100			
○ 공단 주최 간담회 참석율 : (간담회 참석 횟수) / (공단 주체 간담회 실시 횟수) × 100			
○ 평가대상기간 중 실시한 자체평가 및 간담회 참석 실적으로 평가			
현장확인사항			
○ 자체평가 실시 서류(문서), 설문조사결과, 설문지 원본, 공단 수시점검 결과표, K2B 입력자료 확인 등			

B.5 수시점검 결과

세부평가 B5.1		수시점검 평가 결과 (배점:8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수시점검 평가결과	■ 공단 방문점검 평가 결과(배점: 50점)		
	공단의 방문점검 평균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 50
	공단의 방문점검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 40
	공단의 방문점검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 30
	공단의 방문점검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 20
	공단의 방문점검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 10
	공단의 방문점검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0
	■ 수시점검을 통한 업무 개선 여부 (배점: 30점)		
	수시점검을 통한 공단의 요구사항이 전부 개선된 경우		☐ 30
	수시점검을 통한 공단의 요구사항이 일부 개선된 경우		☐ 20
	수시점검을 통한 공단의 요구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0
평가취지			
○ 공단의 방문점검을 통해 교육품질의 지속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평가내용			
○ 공단의 방문점검을 통한 평가 점수 - 공단의 방문점검 평균점수를 반영 ○ 수시점검을 통한 업무 개선실적 - 공단의 수시점검(방문/결과) 개선도를 참조하여 평가			
현장확인사항			
○ K2B 입력자료 확인			